교원인사규정(3-3-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이하 "정관"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3)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대학교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단, 의과대학 전임교 원 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개정 2002.3.1)(개정 2005.2.16)(개정 2010.3.1)(개정 2013.3.28)
 - ② 외국인교원, 비 정년트랙전임교원, 비 전임교원, 특수목적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4.4.)(개정2011.9.22)
- 제3조(정의) ① 학교법인 정관 제39조 2항이 정하는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란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
 - ②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비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급은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개정 2012.7.26.)
 - ③ 제1항의 교원외에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
- **제4조(겸직금지)**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8.4.4)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
 - 2.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 3.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4. 상업·공업·금융업 등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사망하였을 경우

- 2.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3.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 4. 발령을 취소할 경우
- 5. 사립학교법 제57조 또는 정관 제7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하여 면직하는 경우(신설 2005. 11.23)
- 제6조(임기) 교원의 임기는 법인정관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개정 2010.3.1)
 - 1. 교수 : 정년. 단, 신규채용 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2. 부교수 : 3년, 단 신규 임용된 교원은 최초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14.2.27.)
 - 3. 조교수 : 3년, 단 신규 임용자는 최초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12.7.26.)
 - 4. 삭제 (개정 2012.7.26.)
- **제6조의2(교원평가)** ① 교원의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와 강의평가, 대학기여도평가 등을 매년 실시한다.(개정 2008.4.4)
 - ②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4.4)
- 제7조(정년 및 퇴직) ①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의 정년은 만70세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5. 11.23)(개정 2010.11.1)
 - ② 정년의 산출은 임용당시 제출한 생년월일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0.11.1)
- 제7조의2(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4.12)
 - ②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6.4.12)

제2장 임 용

제1절 신규임용

제8조(신규임용) ① 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과 교육, 연구, 대학 및 학과 발전의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임용한다.(개정 2007.3.1)(개정 2012.7.26.)

- ② 계약제 전임교원은 신규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단, 신규 임용된 자는 재계약이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1.5.15)
- ③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1.23)
- ④ 총장은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 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 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5.2.16)
- ⑤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5.2.16)
- 제9조(임용권자) ① (개정 2005.11.23)(삭제 2008.4.4)
 - ②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1.23)
- 제10조(임용시기 및 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4.4)
 -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수 충원계획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4.4)
 -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4)(개정 2010.3.1)
 -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에 대한 모집분야의 전공일치 및 전문성 여부 등의 심사
 -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모집분야에 대한 교수로써의 갖추어야 할 능력, 발전가능성 등의 심사
 -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제10조의 2(임용유예) 총장은 신규임용예정자가 정부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용계약, 의무복무 수행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할 경우 임용예정 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임용 일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1.9.22)
- 제11조(자격 및 직위) ① 교원은 별표1(교원 자격기준)에 의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년수를 갖춘 자라야 한다. 다만, 전공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1.5.15)

- ② 교원의 자격에 관한 연구실적과 교원 경력 년수의 환산은 별표2(연구실적 환산율), 별표3(경력환산율)에 의하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수자격 인정령에 의거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3.1)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자.
- 제13조(신규임용자의 직위)(삭제 2007.3.1)
- **제14조(호봉)** ① 교원의 호봉은 별표2(연구실적환산율), 별표3(경력환산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2.3.1.) (개정 2018. 12. 6)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신규임용된 교원간의 합의하에 별도로 획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6)
- 제15조(제출서류) 교원의 신규임용 예정자는 임용 발령 전에 별표4(제출서류)에 의하여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연구실적 심사기준) 교원의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별첨1(연구실적 심사기준)과 같다.(개정 2005.11.23)
 - ② 신규임용은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을 인정한다. 단,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는 4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7.3.1.)(개정 2011.9.22)
- 제16조의 2(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1. 본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한 후 교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
 - 2. 특수학문분야 및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
 - 3. 해당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 4. 해당전공의 특성화 또는 장기발전계획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신설 2012.1.1)
 - ② 특별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5.11.23)

제2절 승진임용

제17조(승진임용) (삭제 2005.11.23)

- 제18조(승진시기) ① 교원의 승진은 임용시기에 따라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시행하며 승진 시기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12., 2019.01.28.)
 - 1. 4월 1일 승진대상자 : 10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 신규 및 승진 임용자
 - 2. 10월 1일 승진대상자 : 4월 2일부 10월 1일 사이 신규 임용 및 승진 임용자
 - ② 승진임용은 현 직급 임용일로부터대상 시기에 적용한다.(개정 2019.01.28.)
- 제19조(승진기준 및 절차) ① 교원이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전직대학의 최종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교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전직대학의 재직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승진 소요년수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
 - 1. 삭제 (개정 2012.7.26.)
 - 2.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 7년 이상)(개정 2012.7.26.)
 - 3. 부교수에서 교수 5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는 승진할 수 없음) (개정 2003. 3. 26)(개정 2005.2.16)(개정 2005.11.23)(개정 2008.4.4)
 - ②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박사학위 미소지자라도 의사면허증 및 변호사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전문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일한 최저 소요연수를 적용한다.(개정 2008.4.4)(개정 2009.4.1)(개정 2010.3.1)
 - ③ 승진 소요연수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나,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징계처분 시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0.3.1.)(개정 2018. 12. 6)
 - ④ 교원의 승진임용은 단계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단계 심사는 최근 승진 소요연수 이내의 연구실적 심사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에 게재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준은 별첨2(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와 같다.(개정2011.9.22., 2015.6.25)
 - 2. 2단계 심사는 최근 승진 소요연수 이내의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수업평가 결과가 각각 평균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3.1.. 2015.6.25)
 - ⑤ 승진요건을 충족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2008.4.4)
 - ⑥ 제1항내지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여 명백한 공헌이 인정된 자일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06.4.12)(개정 2008.4.4)

- 제20조(동일직급 최고 근무연한) ① 교원이 동일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목과 같다.
 - 1. 2000년 2월 29일 이전 임용자

가. 부교수 : 12년

나. 조교수: 10년

다. 삭제 (개정 2012.7.26.)

2. 2000년 2월 29일 이후 임용자

가. 부교수 : 10년

나. 조교수 : 12년(개정 2012.7.26.)

다. 삭제 (개정 2012.7.26.)

② 계약 임용기간 중 전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제28조 제1항의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 직급 최고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본조신설 2009.4.1)

제21조(연구실적 평가기준) 연구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어 학문적 공헌이 큰 논문 또는 저서
- 2. 기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실적

제22조(교육실적 평가기준) 교육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담당 강의 내용의 충실
- 2. 강의와 학생지도에 있어서의 열의
- 3. 교육 효과의 증대
- 제23조(대학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 본 대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도의 평가는 다음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행정 각 부분의 책임자로서의 공헌
 - 2. 각종 제도의 입안,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
 - 3. 학칙 및 제규정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 4. 기타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헌
- 제24조(직급별 인원수) ① 교원의 직급별 인원수는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직급별 인원수 중 교수의 인원수는 전체 재적교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4.1.15)
- **제2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한다. (개정 2005.11.23.)(개정 2018. 12. 6)

- 1. 해당교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개정 2018. 12. 6)
- 2. 징계처분에 따른 각 호의 기간은 승진 임용에 필요한 소요기간에서 제외하며, 둘이상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제외한다(개정 2018. 12. 6)

가. 정직 : 1년 6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월

- 3.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자질과 열의가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 4. 교육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②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복직일부터 휴직기간을 다시 기산한다.(신설 2010.3.1)
- ③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교육부장관급 이상의 훈장·포상을 받거나 교내·외적으로 대학 발전의 공적이 뚜렷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0.3.1.)(개정 2018. 12. 6)

제26조(제출서류) (삭제2002.3.1)

- 제27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신설 2005.11.23) ①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사는 제19조에 의하여 교수승진자격을 가진 자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 (별표 5) 결과 평균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이상 7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3.1)
 - ⑤ 의학과 임상교수에 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신설 2006. 4.12)

제3절 재임용

- 제28조(재임용) ① 제6조(임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 소요년수는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2.16, 2007.3.1)
 - 1. 부 교 수 : 3년 단, 신규임용자는 최초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2.27.)
 - 2. 조 교 수 : 3년 단, 신규임용자는 최초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7.26.)

- 3. 삭제 (개정 2012.7.26.)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직급별로 연구실적물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2.16)
- 1. 삭제 (개정 2012.7.26.)
- 2. 조 교 수 : 재임용 소요년수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 단, 최초 재임용은 소요년 수 이내 100% 이상의 연구실적 (개정 2012.7.26.)
- 3. 부 교 수 : 재임용 소요년수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 단, 최초 재임용은 소요 년수 이내 100% 이상의 연구실적 (개정 2014.2.27.)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2.16)
-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교원의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 직전학기까지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수업평가 결과가 각각 평균 6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전체평균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2.16.)(개정 2009.4.1.)(개정 2018. 12. 6)
-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2.16)
- ⑥ 위 각 항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29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년도 학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일과 9월 1일에 한다.

제4절 교원인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신설 2018. 12. 6)

제29조의1(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정관 제49조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명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정상 부재 시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임시 위원장이 된다.
- ③ 총장은 인사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정관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9조의2(교원상벌위원회) ① 제29조의1의 제4항에 의거 교원의 상벌사항에 대한 공적심사 및 진상조사를 위하여 교원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과 인사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로 하며 총장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교원의 상벌사항에 대해 공적심사 또는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 ④ 위원회는 교원의 상벌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의해 총장은 신분상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9.01.28.)
 - 1. 신분상 처분은 징계요구, 경고, 주의, 구두경고로 구분한다. 단, 징계의 경우 제32 조를 따른다.
 - 2. 행정상 처분은 시정, 개선, 권고, 부서경고, 부서주의 촉구로 구분한다.
 - 3. 재정상 처분은 변상, 추징, 회수로 구분한다.
- 제29조의3(경력산정위원회) ① 제29조의1의 제4항에 의거 제14조의 신규 임용된 교원 경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력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로한다.
 - ③ 위원회는 교원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한 자격인정조서 환산율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심의하며 필요시 대상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교원의 경력을 산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며, 위원장은 자격인정조서의 자격을 판정하여 대상교원에게 고지한다.

제3장 표 창

제30조(표창) 교원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4.4)

제4장 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을 준용한다.

제5장 징 계

제32조(장계)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관계법령과 정관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급 여

제33조(급여) 교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복 무

- 제34조(복무) ① 교원의 사직원은 개학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3. 3. 26)
 - ② 그 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인사기록 및 서류보관

- 제35조(인사기록 및 서류보관)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관리 및 보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개정 2002.3.1)
 - ② 전항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 1. 임용에 관한 서류
 - 2. 포상에 관한 서류
 - 3. 징계에 관한 서류
 - 4. 인사 통계에 관한 서류

부 칙

- 1.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일자로부터 가산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미술계열의 교원(2008학년도 4.1부 승진대상자까지) 및 해당분야의 탁월한 경력이나 업적을 가진자는 제19조 ①항의 승진 소요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 이상
 -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이상
 - ③ 부교수에서 교수 5년 이상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0년 2월 29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제19조 ①항의 승진 소요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 3년)
 -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 6년)

	③ 부교수·	에서 교수	6년 이상(박	사학위 미술	소지자 7년)
0]	개정규정은	- 2005년 :	11월 23일부터	·	칙 }.
\circ	개정규정은	- 2006년 4	4월 12일부터	부 시행한다.	칙
0]	개정규정은	- 2007년 3	3월 1일부터	부 시행한다.	칙
0]	개정규정은	- 2008년 4	1월 4일부터	부 시행한다.	칙
			년 4월 1일부터 동일직급 최 <u>크</u>		칙 구. 눈은 2010학년도 승진 누락자부터 기산한다.
0]	개정규정은	- 2010년 3	3월 1일부터	부 시행한다.	칙
이	개정규정은	- 2010년 1	11월 1일부터	부 시행한다.	칙
이	개정규정은	- 2011년 3	3월 15일부터	부 시행한다.	칙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개정 이전의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부 칙

-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3.4.1부 승진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 1. (시 행 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재임용 소요년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28조의 부교수 임기 및 재임용 소요 년수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3. (연구실적 적용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및 별첨2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 적용율을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4. (연구실적 및 환산율에 관한 경과조치) 별첨2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 및 환산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게재된 실적부터 적용한다. 단, 2015년 7월 1일 이전 학회에 투고가 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일자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 3. 21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별첨 2의 3. 나의 ① 특허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교 원 자 격 기 준

7) 11	477171 JUNE	ાં તો મોં સો	대학졸업자 및 동등자격자		
직 명	연구실적	자격사항	계	연구실적년수	교육경력년수
조 교 수	200%	・박사학위 소지자・석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이상의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4	2	2
부 교 수	500%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9년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2년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10 12 7	5 2	5 10 7
교수	600%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8년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15 18 9	5 2	10 16 9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인정율(%)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주당 5시간 이하)	50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③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다.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50 5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율(%)
 2.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①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의 연구 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석·박사 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자의 연구경력 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한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0.7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100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3. 산업체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90
②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대학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90 8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율(%)
나.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등	70
중기업체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70
④ 대학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등 • 중기업체	7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② 변호사 개업 기간 ③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변리사 개업기간 ④ 한국 해양대학, 부산, 수산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 1등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역, 항공대 졸업자 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90 90 70 100
라. 의사 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의사 근무 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	70 70 90 70
마.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70 7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90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	70

경력환산율 산출기준

공무원 보수규정

유 별	환산율(%)	경 력	
제1류	100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제외한다.)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제2류	80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력	
제3류	70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제4류	60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제5류	50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제6류	40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외교인, 점원을 제외한다)	
제7류	제7류 30 기타 작업에 종사한 경력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 100%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 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2중 1개만을 산입한다.		

제 출 서 류

서 류 명	제출부수	비고
1. 인사기록카드	1	
2. 신원진술서	3	
3. 서약서	1	
4. 신원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보상액 30,000천원 이상)	1	
5. 건양명인보	1	
6. 호적등본	2	
7. 주민등록초본	3	
8. 주민등록등본	4	
9. 사진(반명함판)	5	
10. 건강진단서	1	
11. 급여통장사본	1	
12. 명함서식	1	
13. 거주지 약도	1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

	소속: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		
피평정자	직 급 : 성 명 :		성 명:			(인)	
구 분				평정기준			
평 가 영 역	평 정 요 목	A (20)	B (15)	C (10)	D (5)	E (0)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사명감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다. 건강상태(연령 참작)	(20)	(15)	(10)	(5)	(())	
2.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20)	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자세 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다.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20)	(15)	(10)	(5)	(())	
3. 대학발전 기여도 (20)	가. 보직활동 나. 정책과제참여 및 사업수주 다. 위원회활동 및 학교행사참여	(20)	(15)	(10)	(5)	(())	
4. 근무생활 및 청렴도 (20)	가. 근무자세 나. 타업무종사 관계 다. 개인생활의 청렴도 라. 규정준수 여부	(20)	(15)	(10)	(5)	(())	
5. 기타 사항 (20)	가. 학내·학과간 인화관계 나. 적극성 및 책임감 다. 구성원간 업무협조 및 신뢰감 라.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	(20)	(15)	(10)	(5)	(())	
	소 계	()	()	()	()	()	
	합 계 (100점)		() 2	점		

** 평정방법 : 평정자는 평정요목을 종합하여 평가영역별 평정란 20점 ~ 0 점 중 택1하여 $\sqrt{}$

연구실적 심사기준

1. 연구실적물의 범위

- 가. 논문은 대학 또는 교수 자격인정을 받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 과학 및 예·체능학계는 예외로 한다.
- 나.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5.2.16)
 - (1) 논문(학위논문 포함)
 - (2) 저서(ISBN 등록된 것에 한함)
 - (3) 창작
 - (4) 특허
 - (5) 전시

2. 연구실적물의 인정

- 가. 강의용 저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저자의 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저서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편찬한 1종 교과서는 제외한다.
- 나. 예·체능계 전공은 총(학)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서 대체할 수 있다.

3. 연구실적 심사

- 가.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1/3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2.3.1)
- 나.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단,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논문을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 명으로 기재한때에도 학위 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간주한다.(개정 2005.2.16)
 - (1) 1인 연구: 100%인정
 - (2) 2인 공동연구 : 70% 인정
 - (3) 3인 공동연구 : 50% 인정
 - (4) 4인 이상 공동연구 : 30% 인정

다. 연구실적평정은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물 등급 및 채용분야 와의 근접도 등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6.4.12)

4. 연구실적 인정기간 및 편수(개정 2005.2.16.)(개정 2012.7.26)

-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 직급에 따른 연구실적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 조교수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연구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도 임명할 수 있으나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발표, 제출하여야 하며 조교수로 재임 용하기 위해서는 유예된 연구실적을 먼저 충족하여야 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

1. 승진·재임용 시 연구실적 적용률 (개정 2012.7.26., 2015.6.25)

가. 승진

구분	부교수 → 교수	조교수 → 부교수
소요년수	5년	6년
연구실적 기준	해당 승진일 기준 최근 5년 내 400% 이상	해당 승진일 기준 최근 6년 내 500% 이상

- ※ 전임강사제도 폐지 이전 조교수 직급을 부여받은 교원의 경우 승진임용 연구실적을 300%이상으로 적용
- ※ 교수 승진대상자는 연구실적기준 중 100%이상을 국제·국내전문학술지 논문에 단독,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재임용

구분	부교수	조교수	최초임용 부교수·조교수
소요년수	3년	3년	2년
연구실적 기준	2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2. 승진·재임용 인정 연구실적 및 환산율 (개정 2012.7.26., 2015.6.25)

		구분	재임용	숭진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SCI급/SCOPUS학술지 (SSCI, SCI, SCIE, SCOPUS)		인정	인정
	국내전문학술지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인정	인정
	석・박사학위		인정	불인정
		저서	인정	불인정
		전시・창작	인정	불인정

- ※ 국내·외 일반학술지(대학논문집 포함)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 국내·외 논문 및 저서 인정 확산율

구 분	인정비율	비고	
1인	100%		
2인	70%	공동연구자가 4인 이상의 공동연구 논문일지라도 주저자일	
3인	50%	(교신저자)경우 3인 인정비율 적용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의 경우 인정비율×2 인정	
4인	30%	·녹세선한 탁물의 계세는한 귀 '8 기 현 8 미필스 2 현 6	

- 석사학위논문 : 100%(재임용 기간 내 학위취득 논문만 인정)
- 박사학위논문 : 200%(재임용 기간 내 학위취득 논문만 인정)
- 전시·창작: 100%(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기준에 따름)

- 3.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인정(대체)기준 (개정 2012.7.26.,2018.03.21.)
 - 가. 산학협력 실적이 있을 경우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재임용 및 승인임용 기간 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적물에 한하며, 인정범위 및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정범위 및 세부 기준
① 특허	■특허란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국내・외 특허를 말한다 ■특허 심사기준 1) 심사대상: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의 총 건수 2) 인정대상: 등록 특허증에 표시된 발명자(공동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서상의 지분적용) 3) 환산기준 - 해외특허: 1건당 100% 인정(최대 200%) - 국내특허: 1건당 50% 인정(최대 100%) ※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 생성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나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노하우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허락을 말한다 ■기술이전 심사기준(최대 150%) 1) 심사대상: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기술이전료의 합산액으로 하며, 적용년도 및 기술이전료는 입금일자와 입금액으로 한다. 2) 인정대상: 이전된 기술의 권리자(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기술의 경우 최초 권리자) 3) 환산기준: 100만원 당 15% 인정
③ 산업체 공동연구	 ●산업체공동연구란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산업체 공동연구 심사기준(최대 150%) 1) 심사대상: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산업체 공동연구수주 합산액으로 하되 수주연구과제 적용년도 및 수주금액은 입금일 자와 입금액으로 한다 2) 인정대상: 연구과제책임자에 한하여 인정(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불인정) 3) 연구과제 수주실적 환산표 - 인문계열: 100만원 당 15% - 자연계열: 200만원 당 15% ※ 정부(지자체), 연구소, 민간단체 등과 체결한 공동연구는 별도로 적용한다.
④ 기술경영 자문	■기술경영자문이란 산업체에 공동연구과제 이외의 방법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금전 및 이와 유사한 대가물을 수수하는 유상행위를 말한다. ■기술경영자문 심사기준(최대 20%) 1)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산업체 기술경영자문 총 건수로 하되 산학협력단에 기술경영자문 신고를 하고 1회당자문료 20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것에 한한다. 2) 인정대상 : 산학협력단에 기술경영자문을 신고하고 실적으로 인정된 경우3) 환산기준 : 1회당 10% 인정

구 분	인정범위 및 세부 기준
⑤ 현장실습 지도	■ 현장실습지도란 현장실습중인 학생을 실습현장에서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현장실습지도 심사기준(최대 20%) 1)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현장실습지도 총 건수로 단기제 또는 학기제 현장실습지도 실적으로 한다. 2) 인정대상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현장실습지도(업체방문)를 신고 한 후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경우 3) 환산기준 : 1회당 2% 인정
⑥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여 지도 및 수상	 ■캡스톤디자인이란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여 지도 및 수상 심사기준(최대 20%) 1) 심사대상: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캡스톤디자인을 지도하고 교내・외에서 수상한 경우 2) 인정대상: 교내・외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여 또는 수상한 경우에 교무처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3) 환산기준 - 교내・외: 1회당 참여는 2%, 수상(참여 포함)은 5% 인정 - 전국규모 경진대회: 1회당 4%, 수상(참여 포함)은 10% 인정
⑦ 학생 및 교원 창업	■ 창업지도 및 학생창업이란 지도학생이 재학 중에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개발・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창업을 한 경우를 말한다 ■ 학생창업 지도 심사기준(최대 40%) 1)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창업지도를 통해 지도 학생이 창업한 경우 2) 인정대상 : 창업을 통해 사업자등록자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3) 환산기준 : 1건당 20% 인정 ■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지도(최대 10%) 1)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도한 경우 2) 인정대상 : 산학협력단이 인정한 창업동아리 3) 환산기준 : 1건당 5% 인정 ■ 교원창업 심사기준(최대 100%) 1)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본인이 창업을 한 경우 2) 인정대상 : 총장의 허가를 받고 창업을 통해 사업자등록자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3) 환산기준 : 창업 1건당 100% 인정
⑧ 산학 협력 관련 국책사업 유치 (정부·지자체 포함)	■산학협력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심사기준(책임자 최대 80%, 참여자 최대 50%) 1) 심사대상: 산학협력 관련 대학 정책사업 기획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인정대상: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대학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관련 정책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책임자 또는 참여자로 참가한 경우에 한해산학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된 자 3) 환산기준 - 책임자: 1회 30% 범위 내에서 기여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참여자: 1회 20% 범위 내에서 기여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인정범위 및 세부 기준
9 정부(지자체), 연구소 또는 대외기관 공동연구 (현물제외)	 ■산업체 공동연구 외에 정부(지자체), 연구소 또는 대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말한다 ■정부(지자체) 및 대외기관 공동연구 심사기준(최대 100%) 1) 심사대상: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공동연구수주 합산액으로 하되 수주연구과제 적용년도 및 수주금액은 입금일자와 입금액으로 한다. 2) 인정대상: 연구과제책임자에 한하여 인정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불인정) 3) 연구과제 수주실적 환산표 - 인문계열: 100만원 당 5% - 자연계열: 200만원 당 5%
① 산학연계 인력양성	■산학연계 인력양성은 학생이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산학연계 인력양성 심사기준(최대 100%) 1)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기간 내 계약학과 유치,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 운영 등 산학연계 인력양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대상 - 계약학과 유치 :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과목 운영 : 산업체와 협약 하에 개설한 분담교과목으로 학부과정의 이론 및 실습강의 운영 책임자 - 산업체 재직자 교육 : 산업체 특강, 산업체 재직자 향상과정 등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 실적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가족회사, 취업예약기업, 기업연구소 유치 : 유치 실적은 산학협력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의하되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학 내에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3) 환산기준 - 계약학과 유치 : 100%(최대 100%) -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과목 개설 : 과목당 5%(최대 20%) - 산업체 재직자 교육 : 1회당 2%(최대 10%) - 가족회사, 취업예약기업 협약 및 운영 : 1회당 10%(최대 30%) - 기업연구소 유치 : 1회당 50%(최대 50%)